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5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5  |
| 1. 총괄 검토 .....               | 5  |
| (1) 지역공공은행의 의의 및 논의 배경 ..... | 5  |
| (2) 지역공공은행 사례 .....          | 6  |
| (3) 제정안의 주요내용 .....          | 7  |
| (4)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 ..... | 8  |
| 2. 조문별 검토 .....              | 10 |
| (1) 총 칙 .....                | 10 |
| (2) 임직원 및 이사회 .....          | 15 |
| (3) 지역금융위원회 .....            | 19 |
| (4) 업 무 .....                | 23 |
| (5) 회계 및 자산 .....            | 32 |
| (6) 감독 .....                 | 36 |
| (7) 벌칙 및 부칙 .....            | 39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28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6.
3. 회부연월일 : 2025. 1. 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이는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보조금 제공, 기금 마련, 세제 혜택 등으로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고, 정책 대상도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시중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 대규모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존속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지역 불균등 발전

의 문제 및 금융 소외 문제, 그리고 시중금융기관의 지역 내 독과점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앙 종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안 제3조).

다.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함(안 제6조).

라.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안 제10조).

마. 은행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금융위원회가 임면함(안 제13조).

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정관에 관한 사항, 감사의 임면 등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은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지역금융·지역상생협력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위촉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주민·기업 자금 지원,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투자,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지원 등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증권에의 응모·인수·투자, 채무의 보증·인수, 예금·적금의 수입,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2조).

아. 지역공공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음(안 제26조).

자. 지역공공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채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함(안 제27조).

차.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 등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역공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

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 명령, 시정명령 등 조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감독에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 요구 또는 장부·서류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37조 및 제39조).

### Ⅲ. 검토의견

#### 1. 총괄 검토

##### (1) 지역공공은행의 의의 및 논의 배경

미국에서 공공은행(public bank)의 개념은 시민이나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노스 다코타(North Dakota)주의 공공은행(public bank)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음. 이러한 공공은행은 전적으로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기관으로서, 당해 지역의 공공이익에 대한 기여가 주요 설립목적이 됨.<sup>1)</sup>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 목적은 대형 시중은행에서 관심 두지 않는 지역의 공공정책과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이러한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경제주권 강화로 이어져 지역소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sup>2)</sup>

이러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 2건(배진교의원안, 강성희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송재봉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1) 김용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은행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제언(미국의 North Dakota 은행을 모델로 하여)”, 경영법률 제31권 제1호, 2020. 10. 9.

2) 경향신문, “지역공공은행 도입 땀 지자체 경제주권 강화와 지역소멸 해소 기여”,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2024.1

## (2) 지역공공은행 사례

지역공공은행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미국의 노스 다코타(North Dakota)주의 공공은행(public bank)을 들 수 있는데, 동 은행은 지역 은행들과 신용협동조합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스 다코타(North Dakota)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1919년에 200만 달러의 자본금을 기초로 출범하였음.

동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방식을 보면, 세금, 요금(fee) 징수로 발생하는 주의 모든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외에도 법인 계좌, 시·카운티 등 하위 지방정부 등의 자금도 예치함.<sup>3)</sup>

동 은행의 조직구조를 보면, ① 주지사, 법무부장관, 농업부장관으로 구성된 주산업위원회(the State Industrial Commission)가 은행의 운영 방향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② 주지사에 의해서 선출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은행의 업무, 관리 및 절차에 대해서 심의하며, ③ 은행의 CEO, 최고대출임원, 최고관리임원, 최고경영임원, 최고재무임원 및 이사 등 6인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은행을 운영하고, ④ 주의 금융기관 관장 부서가 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함.

한편, 주요 업무로는 지방정부 및 주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인수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단기의 채무금융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며, 기존 상업은행들과 협력하여 상업은행들이 판매한 주택담보대출, 법인대출 등을 2차로 매수하며, 지역은행과 신용

---

3) 개인들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동 은행은 다른 상업은행들이 제공하는 ATM, 지점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이 계좌를 개설할 유인이 높지 않음.

협동조합들을 위해 당좌수표를 결제해 주고 화폐를 공급하는 일종의 미니 중앙은행의 기능도 수행함.

### (3)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공공은행은 ① 시중은행과 달리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②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51%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③ 운영기관으로는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지역금융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④ 예·적금 수입, 지역금융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⑤ 예금자의 원리금 보장을 위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며,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건전성 감독을 하는 것임.

#### [제정안의 주요내용]

| 구 분    | 주요내용                                                                            |
|--------|---------------------------------------------------------------------------------|
| 적용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br>※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음 |
| 자본금    |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                                            |
| 운영조직   | ①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로 이사회 구성<br>② 정관에 관한 사항, 감사의 임면 등을 위해 <b>지역금융자문위원회</b> 설치        |
| 자금조달   | 예·적금 수입, 지역금융채권 발행, 국가·지자체·한국은행·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
| 원리금 보장 | 지역공공은행 납입 출연금, 지자체 출연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예금자 보호기금 설치·운영                              |
| 감독     |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감독하고, 필요시 시정명령 등 조치                                         |

#### (4)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

지역공공은행의 설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찬성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음.

첫째,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지역 주민의 예금 등으로 창출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sup>4)</sup> 이에 따르면 기존 시중은행은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본사가 있는 역외로 이전하고 있고, 몇몇 지방은행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하기도 하나 IMF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 자체가 6개<sup>5)</sup>만 남아 있으며 해당 은행들도 대주주가 지역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전체를 지역에 재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임.

둘째, 지역공공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지방정부, 소비자, 학생, 사업체들 및 금융 소외계층에게 신용을 제공할 수 있고,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현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이러한 정책금융을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은행을 설립한다면 재원을 보다 풍족하게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임.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음.

---

4) 정기석, 「서울이코노미뉴스 칼럼: 지역경제 선순환은 ‘지역공공은행’으로」, 2023.5.3.

5)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첫째, 지역공공은행은 해당 지자체 장이 은행장의 임명권, 지역금융위원회 운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하도록 제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공공은행이 해당 지자체의 행정 목적(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달성에만 집중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등한시 할 수 있음.

둘째, 해당 지자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해 51% 이상을 출자하고, 지방공공은행이 발행하는 지역금융채권에 보증을 할 수 있으며, 지방공공은행 예금자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해야 하므로, 지방공공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연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 조문별 검토

### (1) 총 칙

제정안 제1장 총칙에는 지역공공은행의 목적(안 제1조), 성격(안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영업구역(안 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안 제5조), 자본금(안 제6조), 정관(안 제7조), 등기(안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안 제9조) 등 총괄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b>제1장 총칙</b>                                                                                                                         |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성격 등) ① 지역공공은행은 법인으로 한다.<br>② 지역공공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한다.<br>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지역공공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 제4조(영업구역) 지역공공은행의 영업구역은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 제5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지역공공은행의 본점은 영업구역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곳에 둔다.<br>② 지역공공은행은 영업구역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

## 제 정 안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자본금) ①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7조(정관) ① 지역공공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지역공공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8조에 따른 지역금융위원회(이하 “지역금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① 지역공공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역공공은행이 아닌 자는 지역공공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i)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제3조에서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이 지역공공은행에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이유는 지역공공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강화 등의 정책적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건전성 규제, 내부통제 및 영업행위 규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기존 은행들과 같이 여·수신,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지역공공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가가 출자·설립한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도 근거 법률에서 「은행법」 등을 적용하고 있음.<sup>6)</sup>

#### 6)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5

## ii) 자본금

제정안은 제6조에서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자본금에 대한 규율방식은 「한국산업은행법」<sup>7)</sup>과 유사한데, 지역공공은행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은행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과 공통점이 있으므로, 산업은행을 모델로 자본금에 대한 규율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해당 지역의 미니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출, 대학생 학자금 융자,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출,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2차적인 채권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여건이 미흡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sup>8)</sup>이므로, 지역공공은행 자본금의

---

호까지·제7호·제9호,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 7) 「한국산업은행법」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8) 2025년도 예산 기준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56.7%, 도의 재정자립도는 36.6%, 시의 재정자립도는 31.6%임

100분의 51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본금 규모를 필요한 수준보다 낮게 설정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역공공은행이 유지해야 하는 최소자본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정해진 최소자본금 규모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은행법」<sup>9)</sup>에서는 최소자본금의 규모(원칙: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9) 「은행법」

**제68조(벌칙)**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 임직원 및 이사회

제정안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에서는 임원(안 제10조), 임원의 직무(안 제11조), 이사회(안 제12조), 임원의 임면(안 제13조), 임원의 임기(안 제14조), 대리인 선임(안 제15조), 직원의 임면(안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17조)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b>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b></p> <p>제10조(임원) ①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p> <p>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p> <p>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지역공공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은행장은 지역금융위원회의 자문을 반영하여 지역공공은행을 운영한다.</p> <p>③ 은행장은 지역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감사는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p> <p>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p> <p>② 이사회는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p> <p>③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

| 제 정 안                                                                                                                                                                                                                                                                                                                                                                                                                                                                                                                                                                                                                                                                                                             |
|-------------------------------------------------------------------------------------------------------------------------------------------------------------------------------------------------------------------------------------------------------------------------------------------------------------------------------------------------------------------------------------------------------------------------------------------------------------------------------------------------------------------------------------------------------------------------------------------------------------------------------------------------------------------------------------------------------------------|
| <p>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13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p> <p>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p> <p>③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p> <p>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p> <p>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 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p> <p>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 에서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16조(직원의 임면) 지역공공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p> <p>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역공공은행의 임원 및 지역금융위원회 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p> |
| 부 칙                                                                                                                                                                                                                                                                                                                                                                                                                                                                                                                                                                                                                                                                                                               |
|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i) 이사회 구성

제정안은 제12조에서 지역공공은행의 이사회를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은행장을 이사회의 의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사외이사의 포함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만을 열거하고 있고, 이사에 사외이사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인데, 이는 「한국산업은행법」의 이사회에 관한 규정<sup>10)</sup>을 차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짐.

다만, 은행의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sup>11)</sup>에서는 금융회사의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은행의 경우도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한국산업은행 정관」에는 사외이사 규정<sup>12)</sup>을 두어 실질적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ii) 감사기구

제정안은 지역공공은행의 감사기구로서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

---

10) 「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사회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12) 「한국산업은행 정관」

제25조(임원) ① 이 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8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음. 이는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은행에 대한 근거법을 차용하여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sup>13)</sup>

다만, 제정안이 의도하는 지역공공은행은 정책은행적 성격과 더불어 일반은행적 성격(지역주민 및 기업에 대한 여신)도 지니고 있어 업무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점 및 국가가 설립한 정책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미흡하여 재무건전성 관리가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또한 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sup>14)</sup>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감사위원회를 중앙회 직속으로 두고 감사위원도 이사와 별도로 선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sup>15)</sup>

---

13) 「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임원)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4조(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1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3) 지역금융위원회

제정안 제3장 지역금융위원회에서는 지역금융위원회 설치(안 제18조), 위원회 구성(안 제19조), 위원의 해촉(안 제20조), 위원회 운영(안 제21조)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b>제3장 지역금융위원회</b></p> <p>제18조(지역금융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에 따른 정관에 관한 사항</li> <li>2. 제13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 임면</li> <li>3. 그 밖에 지역공공은행 및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의회의원</li> <li>2. 지역공공은행의 영업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li> <li>3. 지역금융 및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4. 지역공공은행의 영업구역 내에서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li> </ol> |

15)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사기구의 독립성상 한계 등이 지적되어 2017년 12월 26일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소속에서 중앙회 직속으로 이관한 것임.

## 제 정 안

관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지방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로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사회에 제공

| 제 정 안                       |  |
|-----------------------------|--|
| 하여야 한다.                     |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지역금융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① 정관에 관한 사항, ② 감사의 임면, ③ 그 밖에 지역공공은행 및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자문·의결함. 이러한 지역금융위원회의 역할은 산업은행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산업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역공공은행의 주요 업무에 대해 지역금융위원회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상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운영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i) 정관에 관한 사항, ii) 감사의 임면, iii) 기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승인 사항 이외에도 iv) 산업은행 회장 제청권, 전무이사과 이사의 임면권 및 업무방법서 승인권, 정관변경 인가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지역금융위원회의 권한에 비해 넓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지역공공은행장 제청권은 운영심의위원회, 전

무이사와 이사의 임면권 및 정관변경권은 지방자치단체장, 업무방법서 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가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지역공공은행은 지역금융위원회 조직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영향을 받도록 할 것인지, 독립된 지역금융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권한]

|                 | 지역공공은행법안<br>(지역금융위원회)                           | 한국산업은행법<br>(금융위원회)     |
|-----------------|-------------------------------------------------|------------------------|
| 정관에 관한 사항       | 지역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 감사의 임면          | 지역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 그 밖에 중요사항       | 지역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 은행장 임면          | 운영심의위원회 <sup>16)</sup> 의<br>제청으로<br>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 | 금융위원회의 제청으로<br>대통령이 임면 |
| 전무이사과 이사<br>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                                         | 금융위원회                  |
| 업무방법서 승인권       | 지방자치단체장 및<br>지방의회                               | 금융위원회                  |
| 정관변경 인가권        | 지역금융위원회의 승인을<br>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br>인가               | 금융위원회                  |

1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업 무

제정안 ‘제4장 업무’에서는 업무(안 제22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안 제23조), 업무방법서(안 제24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안 제25조),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등(안 제26조), 예금지급준비금 등에 관한 준수 사항(안 제27조),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안 제28조), 기금의 조성·운용 등(안 제29조)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4장 업무                                                     |
| 제22조(업무) ① 지역공공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
| 1. 지역주민·기업 자금 지원                                           |
| 2.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투자                                       |
| 3.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
| 4.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지원                           |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 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지역금융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
| ② 지역공공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 정 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응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지역공공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 가. 예금·적금의 수입
- 나. 지역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지역공공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5. 내국환·외국환 업무
6.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조사·분석·평가·지도·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업무
- ③ 지역공공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공급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 제 정 안

수 있도록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지역공공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다.

제24조(업무방법서) 지역공공은행은 제22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지역공공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지역공공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지역금융채권의 발행 등) ① 은행은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지역금융채권의 발행은 지역공공은행만이 할 수 있다.

③ 지역금융채권의 발행액, 지역공공은행이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지역공공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지역금융채권의 현재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지역금융채권의 현재액
3. 다른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 제 정 안

- ④ 지역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⑤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예금지급준비금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지역공공은행은 예금채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공공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현금, 금융기관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28조(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 등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역공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② 지역공공은행은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서 예금등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공공은행을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예금자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⑦ 지역공공은행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29조(기금의 조성·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제 정 안                                                                                                                                                                                                                                                                                                                                                                                                                                                                                                                                                                                                                                                                                    |
|------------------------------------------------------------------------------------------------------------------------------------------------------------------------------------------------------------------------------------------------------------------------------------------------------------------------------------------------------------------------------------------------------------------------------------------------------------------------------------------------------------------------------------------------------------------------------------------------------------------------------------------------------------------------------------------|
| <p>1. 지역공공은행이 납입하는 출연금</p> <p>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p> <p>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p> <p>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p> <p>5. 그 밖의 수입금</p> <p>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30조(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p> <p>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공공은행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공은행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p> |
| 부 칙                                                                                                                                                                                                                                                                                                                                                                                                                                                                                                                                                                                                                                                                                      |
|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i) 업무 범위

제정안 제22조에서는 지역공공은행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지역주민·기업 자금 지원, ②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투자, ③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④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지원,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위탁, ⑥ 그

밖에 지역금융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등임. 이러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역공공은행과 기존 은행 간의 경쟁 관계가 발생하여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안 제22조제1항제1호의 ‘지역주민·기업 자금 지원’은 지역공공은행이 금융소비자(개인 및 기업)에 대한 대출 및 금융 상품 판매 등에 특별한 제약 없이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상업은행 및 농·축·수협 등의 금융기관과 업무범위와 중복되어 상호 경쟁 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둘째, 지역공공은행이 넓은 범위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서는 업무 범위에 사회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지원 등의 i) 정책금융 기능과 지역 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등 ii) 미니 중앙은행 기능에 더하여 지역주민·기업 자금 지원 등 iii) 일반은행의 대출 업무 기능도 허용하고 있는데,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공공은행이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공공은행의 업무범위를 초기

에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의 여신<sup>17)</sup>에 한정하고, 자본 규모 확대 정도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투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ii) 지역금융채권 발행 한도

제정안은 지역공공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제정안은 그 상한을 납입자본금+적립금의 10배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① 「은행법」상 은행은 채권발행 상한을 자기자본의 5배로 강하게 통제되고 있고,<sup>18)</sup> ② 산업은행(30배)<sup>19)</sup>, 중소기업은행(20

---

17) 가령, 사회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혼부부 내집마련 금융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18) 「은행법」

**제33조(금융채의 발행)**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발행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은행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비상장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 19)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배)20) 등의 경우 국책은행으로서 보다 안정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동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역공공은행은 제도 도입 초기로서 아직 해당 기관들만큼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ii)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제정안은 지역공공은행이 예금 등의 채무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동 기금은 지역공공은행이 납입하는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됨.

다만, 동 기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호기금’과는 채무원리금의 담보력에서 차이가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호기금’은 기금에 가입한 부보금융기관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조성

---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3.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 20)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된 것임에 반해 동 제정안의 ‘예금자보호기금’은 대부분 지역공공은행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금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제정안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해서 i) 지방공공은행이 동 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차입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 및 ii) 한국은행은 지역공공은행에 대해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대출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 기금의 재원확보가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역공공은행의 원리금 등 채무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보다 지역공공은행도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5) 회계 및 자산

제정안 제5장 ‘회계 및 자산’에서는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안 제31조), 이익금의 처리(안 제32조), 손실금의 보전(안 제33조), 여유금의 운용(안 제34조), 재산 소유의 제한(안 제35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안 제36조)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b>제5장 회계 및 자산</b></p> <p>제31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 지역공공은행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p> <p>② 지역공공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지역공공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li> <li>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서류</li> </ol> <p>제32조(이익금의 처리) ① 지역공공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li> <li>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한다.</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3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한 후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때에는 현금이나</p> |

| 제 정 안                                                                                                                                                                                                                                                                                                                                                                                                                                                                                                                                        |
|----------------------------------------------------------------------------------------------------------------------------------------------------------------------------------------------------------------------------------------------------------------------------------------------------------------------------------------------------------------------------------------------------------------------------------------------------------------------------------------------------------------------------------------------|
| <p>현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손실금의 보전) 지역공공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다.</p> <p>제34조(여유금의 운용) 지역공공은행은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p> <p>제35조(재산 소유의 제한) 지역공공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p> <p>제36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공공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p> |
| 부 칙                                                                                                                                                                                                                                                                                                                                                                                                                                                                                                                                          |
|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i) 특별법상 법인에 대한 출자 특례

제정안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특별법상 법인에 대한 출자 특례”<sup>21)</sup>를 지역공공은행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 규정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출자·유지해야 하는

21) 「한국산업은행법」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법인들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정부 몫을 대신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제정안은 이와 유사하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출자·유지해야 하는 법인에 대하여 지역공공은행이 대신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정부에 출자 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신 출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출자 의무가 있는 법인은 통상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공공은행이 이에 출자하는 것은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신 출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안 제22조제2항22)상 지역공공은행이 자신의 업무

22)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22조(업무) ② 지역공공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옹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지역공공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 가. 예금·적금의 수입
  - 나. 지역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지역공공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5. 내국환·외국환 업무
6.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조사·분석·평가·지도·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지방자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동 조항의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짐.

## (6) 감독

제정안 제6장 ‘감독’에서는 감독(안 제37조), 임원의 해임사유(안 제38조),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안 제39조)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
|-----------------------------------------------------------------------------------------------------------------------------------------------------------------------------------------------------------------------------------------------------------------------------------------------------------------------------------------------------------------------------------------------------------------------------------------------------------------------------------------------------------------------------------------------------------------------------------------------------------------------------------------------------------------------------------------------------------------------------------------------------------------------------------------------------------------------------------------------------------------------------------------|
| 제6장 감독                                                                                                                                                                                                                                                                                                                                                                                                                                                                                                                                                                                                                                                                                                                                                                                                                                                                                  |
| <p>제37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li> <li>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li> <li>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li> </ol> <p>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경고 및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공공은행 은행장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지역공공은행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역공공은행 은행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

| 제 정 안                                                                                                                                                                                                                                                                                                                                                                                                                                                                                                                                                                              |
|------------------------------------------------------------------------------------------------------------------------------------------------------------------------------------------------------------------------------------------------------------------------------------------------------------------------------------------------------------------------------------------------------------------------------------------------------------------------------------------------------------------------------------------------------------------------------------|
| <p>제38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p> <p>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지역공공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지역공공은행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p> <p>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무이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p> <p>제39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7조에 따른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
| 부 칙                                                                                                                                                                                                                                                                                                                                                                                                                                                                                                                                                                                |
|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i) 감독의 주체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포괄적 감독·명령권,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권, 징계·징계요구권, 보고·출석요구 및 검사권 등의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다만, ①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총괄적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회계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감독역량이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비해 미흡할 수 있다는 점, ③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sup>23)</sup>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외에 행정안전부의 직접적 감독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sup>23)</sup>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3)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6조(설립·운영)**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7) 벌칙 및 부칙

제정안 제7장 ‘벌칙’에서는 벌칙(안 제40조), 양벌규정(안 제41조), 과태료(안 제42조)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벌칙</b></p> <p>제40조(벌칙) ① 지역공공은행의 임직원이 자금을 지역공공은행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대출하거나 지역공공은행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지역공공은행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li> <li>2. 제32조를 위반하여 순이익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35조를 위반하여 지역공공은행으로 하여금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li> </ol> <p>제41조(양벌규정) 지역공공은행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지역공공은행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2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지역공공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i) 벌칙규정 추가

제정안 제40조제2항에서는 지역공공은행의 임직원이 안 제26조의 사항을 위반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 안 제32조를 위반하여 결산순이익금을 규정에 따라 적립하지 않은 경우, 안 제35조를 위반하여 지역공공은행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지역공공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들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이해됨.

다만, 안 제6조<sup>24)</sup>의 자본금 규정 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지역공공은행은 자본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잠재적 손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실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최저자본금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자본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앞서 ‘2. 조문별 검토 (1) 총칙’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담보하고, 위반시 처벌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임.

---

24)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6조(자본금)** ①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참고로, 「은행법」 제68조제1항제1호<sup>25)</sup>에서는 동법상 규정된 최저 자본금 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ii) 설립준비행위를 위한 부칙 필요

제정안은 별도의 부칙 없이 시행일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음. 이는 법률 제정 후에도 하위법령 정비 및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통상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법률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부칙을 두어 법률 시행일 이전에 설립주체들이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인가, 설립 등기, 조직 구성 및 임원후보자 추천·제청 등 각종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sup>26)</sup>가 필요하므로, 동 제정안에 이와 같은 설립준비행위에 대한 부칙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25) 「은행법」

**제68조(벌칙)**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6) 「법률 제5249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②(공제회의 설립준비) 노동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설립인가, 공제회의 설립업무에 대한 지원등 공제회설립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              |
|--------------|
| 문 의 처        |
| 02)6788-5333 |